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제조혁신정책과는 창업벤처혁신실에, 제조혁신지원과는 중소기업정책실에 각각 재배치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창업벤처혁신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속 한시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중소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2.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69호부터 제7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9.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검
- 7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71.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 72.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 7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7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7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확산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에 제54호부터 제6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4.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55.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5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57.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8.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9.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60.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6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2.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4.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제30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4급 1명)”을 “(4급 또는 5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을 “별표 5”로 한다.
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
 1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1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운영

1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18.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특례관련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483”을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77”을 “47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6”으로 한다.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5 제3호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	1명
2) 창업벤처혁신실 2개 과	10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 획단장) ① 중소기업스마트제조 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한다.	<삭 제>
②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 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 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 원정책의 총괄·조정	
4.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 ·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범 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사 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기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
8.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11.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9.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② (생략)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8. (생략)	1. ~ 68. (현행과 같음)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	69.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검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7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71.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7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72.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u>기관과의 협의</u>	<u>사항</u>
<u>73.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운영</u>	<u>7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 력에 관한 사항</u>
<u>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u>	<u>7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에 관한 사항</u>
<u>75.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7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사항</u>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② (생략)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53. (생략)	1. ~ 5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4.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 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 항</u>
<u><신 설></u>	<u>55.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u>
<u><신 설></u>	<u>5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 원정책의 총괄·조정</u>
<u><신 설></u>	<u>57.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 집·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8.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u>

	<u>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 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9.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0.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2.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4.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 에 관한 사항</u>
제30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①· ② (생략)	제30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12.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 정 및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 에 관한 사항</u>	<u>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 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u>

<신 설>	1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신 설>	1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신 설>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신 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운영
<신 설>	1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신 설>	18.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 정 및 특례관련 제도, 지역특 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 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 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 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⑤ ----- ----- (4급 또는 5급 1명)-----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해야 한다.	----- -----.
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5----- -----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 구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에 따른 계급 별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제 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 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 구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483	482	-1
·	·	·	
·	·	·	
일반직 계	477	476	-1
고위공무원단	17	16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